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 7 차 정 무 위 원 회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시 국회 보고 등〉

■ 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395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시 국회 보고 등	3

I. 제안경위

1. 제안자 : 김용만의원 등 11인
2. 제안일 : 2024. 9. 27.
3. 회부일 : 2024. 9.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할 때에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크게 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시정조치를 요청한 사실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부령·훈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준사법적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명령 등의 개정 또는 폐지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등 그 조치 결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요청한 사실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시정조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이 그 조치 결과를 법제처장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하여 행정입법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9조제1항 및 제2항).

Ⅲ. 검토의견: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시 국회 보고 등

☐ 개정안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에게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경우, 그 요청 사실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시정조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이 그 조치 결과를 법제처장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

[illegible]

실을 법제처장에게 <u>통보하여야</u>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u>한다</u>.	----<u>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u>-----. ② ----- -----<u>하며, 그 조치 결과(요청받은 시정조치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법제처장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u>.
--	--

□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할 때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크게 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폐지 등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시정조치를 요청한 사실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¹⁾

○ 이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한 경우, 이후 법령의 개정 등 시정조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법령의 제정·개정을 총괄하는 법제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

1)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행정소송법」 제6조제1항) 및 소관 행정청(「행정소송규칙」 제2조)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이 있으면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 및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49조).

필요하기 때문임.

- 이에 대하여, 대통령령·부령·훈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준사법적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명령 등의 개정 또는 폐지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등 그 조치 결과에 대한 국회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표 1] 시정조치 요청 및 이행 현황

구분	시정조치 요청 건수	조치 결과	
		이행	미이행
2022년	3건	2건	1건
2023년	1건	1건	0
2024년	4건	1건	3건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이에 개정안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한 경우, 시정조치를 요청한 사실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조치결과를 법제처장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회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는 행정입법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여 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받는 등 자의적인 행정입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²⁾ 개정안을 통하여 행정입법에 대한 구체적 내지 부수적 통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고, 입법권을 위임한 국회 또한 위임 권한이 적절히 사용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한 사실을 국회에 “보고”하고(안 제59조제1항), 관계 행정기관은 조치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안 제59조제2항)되어 있는데, 그 대상이 각각 “시정조치를 요청한 사실”과 “조치 결과”라는 점에서 보고의 목적 및 구두보고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³⁾ 시정조치를 요청한 사실을 “제출”하도록 하고, 조치 결과를 “보고”

- 2) 「국회법」 제98조의2(대통령령 등의 제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할 때(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할 때를 말한다)에도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④ 상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 경과와 처리 의견 등을 기재한 검토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검토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처리하고 정부에 송부한다.
- ⑥ 정부는 제5항에 따라 송부받은 검토결과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그 처리결과(송부받은 검토결과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상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 ⑧ 제7항에 따라 검토내용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⑨ 전문위원은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한다.
- 3) 보고방식에서 ‘보고’란 구두보고와 보고서 등의 제출을 모두 포함하는 반면, ‘제출’은 보고서 등의 제출만을 의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양자를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하고, 보고의 목적, 보고사항의 중요성, 구두보고의 가능성과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보고’와 ‘제출’ 중 보다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음(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723.-724.).

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 밖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요청한 사실을 보고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인지, 관계 행정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인지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이나, 일부 체계·자구에 관하여는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음.⁴⁾

문 의 처
02)6788-5112

4) 안 제59조 제1항 및 제2항의 용어 통일을 위하여 제59조 제1항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